

신창동지역주택조합 공고 제2023-01호

광주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)사업 보상에 관한 협의 요청 공시송달공고

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3-1호에 따른 광주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)사업【신창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공사】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통지 및 서류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·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 불능인 토지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, 토지소유자께서는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(신창동지역주택조합)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등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.

2023. 03. 20.

신창동지역주택조합 대표자

1. 공익사업의 개요

- 사업명 : 광주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)사업 [신창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공사]
- 사업위치 : 광주 광산구 신창동 331-2번지 일원
- 사업시행자 : 신창동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호철
(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101번안길 19-14, 402호(흑석동))

2. 공고사유 :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·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 불능

3. 공고기간 : 2023. 03. 20. ~ 2023. 04. 03.(15일간)

4. 협의할 사항

가. 협의기간

- 2023. 03. 20.부터 2023. 04. 24.까지 (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)

나. 협의장소(계약체결장소)

신창동지역주택조합 사무실

- 주 소 : 광주 광산구 풍영로101번안길 19-14, 402호 (흑석동)
- 연락처 : 062-521-0008

다. 협의 방법

- 협의 후 계약서 작성

라. 보상의 시기, 방법 및 절차

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,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사업시행자(신창동지역주택조합)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(은행/증권 계좌) 단, 소유권 이외의 권리(압류, 가압류, 근저당권, 지상권 등)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.
- 협의기간 내 협의 불성립시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하고 재결보상금은 공탁합니다.

마.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

- 소유자 인감증명서 2부(일반용 1부, 부동산매도용 1부)

[매수자 인적사항]

성 명 : 신창동지역주택조합

등록번호 : 2414-04665

주 소 : 광주 광산구 풍영로101번안길 19-14, 402호 (흑석동)

- 소유자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각 1부(주소변경사항 전부 기재)
- 협의대상토지 등기필증,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토지(임야)대장등본 각1부
- 국세·지방세 완납(미과세)증명서 각1부
-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및 통장 지참
- 법인인 경우 :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각1부

5. 공시송달 목록 (금액은 소유자 개별문의 요망)

소재지	지번 (원래지번)	지목	지적 면적	편입 면적	공시송달 대상자		비고
					성명	주소	
광주 광산구 신창동	1080-47 (1080-47)	답	2㎡	2㎡	박종숙	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383-27 (신창동)	소유자
	1080-21 (1080-21)	답	69㎡	69㎡			
	1080-52 (1080-48)	답	23㎡	23㎡			
	1080-50 (1080-8)	대	22㎡	22㎡			
	338-2 (338-2)	도	7㎡	7㎡	정대중	광주 광산구 신창동 338-2	소유자

6. 기타사항 및 문의처

공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,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시행자 신창동지역주택조합(연락처 062-521-0008, 담당자 이민호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